

[서식 예]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(공정증서로 토지)

부동산강제경매신청

채 권 자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 구 금 액

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집행권원의 표시

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공증인가 공증인 000 사무소 20oo년 증서 제00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별지목록 기재와 같음.

신 청 취 지



- 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.
- 2.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채권자는 20oo. oo. oo. 채무자에게 금 ooooooo원을 대여하였습니다. 이에 대하여, 20oo. oo. oo. 해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원을 20oo. oo. oo. ~ 20oo. oo. oo. 까지 매월 ooo만원을 분할지급하고, 변제를 지체한 경우 연 1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공증인 oo 사무소증서 20oo년 제oooo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	1통
1. 주민등록초본(채무자)	1통
1.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	1통
1.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·시군구청통보·	용),
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 (등기소보관용)	각 1통
1. 법원보관금영수증	1통
1. 이해관계인목록	2통
1. 부동산목록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


○○지방법원 귀중 [별 지]

경매할 부동산의 표시

1.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-ㅇㅇ 전 168㎡. 끝.



[별 지]

이해관계인의 표시

번 호	구 분	성 명	주 소
채권자 겸	00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	
1	가압류권자	01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		020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2	채무자 겸 소유자	$\Diamond \Diamond \Diamond \Diamond$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3	근저당권자	◈◈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4	근저당권자	주식회사 ■ ■ 상호저축은행	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

제출법원	경매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(민사집 행법 제79조제1항, 제 268조) 민사집행법 제80조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(부동산목록 : 1통 제출)				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 · 신청기각·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조제5항) 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) (이해관계인) ·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). · 인지액: ○○○원(□ 만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: ○○○원(□ 전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·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: 채권금액의 1,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(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 1)) 및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(지방세법 제151 조제1항 제2호)납부 · 감정료, 신문공고료, 부동산현황조사료,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.				
비 용					
기 타	야 함. ·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민사집행법 제88조에 의한배당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음(대법원 1983. 10. 15.자 83마393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,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원리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(대법원 1968. 6. 3.자 68마378 결정). · 경매신청서에 원금 이외에 이자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이자채권에 관하여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배당받을 수 있음.	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